

WE ARE YOUR DOL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사무국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고지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II편의 요구 사항에 따라, NYS 노동부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용: NYS 노동부는 고용 또는 고용 관행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ADA의 I편에 따라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을 준수합니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NYS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 자격이 되는 장애인이 정식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그리고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들이 정보 및 소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타 방법 등 NYS 노동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되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의사 소통으로 연결시켜 주는 적절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 및 절차의 수정: NYS 노동부는 장애인들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누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을 타당한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일반적으로 출입 금지된 경우에도 NYS 노동부 사무실에서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환영합니다.

뉴욕시 노동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나 정책 또는 절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예정된 행사 48시간 전까지 뉴욕시 노동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사무국에 (518) 457-1984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ADA는 NYS 노동부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 사항은 뉴욕주 노동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사무국에 (518) 457-198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NYS 노동부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서 물품을 회수하는 등 보조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정책의 타당한 개선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장애를 안고 있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어떤 추가 요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